



## 파리協約 100周年紀念行事

—9月 26日, WIPO 執行委年次總會때—

1983年 3月 20日은 11個 全權國家가 파리에 있는 프랑스 外務省에서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에 署名한지 100周年이 되는 날이었다.

파리協約은 1880年の 第1次外交會議와 1883年の 第2次外交會議에서 準備되어 1884年 7月 7日 14個國間에 發效되었다.

當初의 파리協約 原文은 19個條로 되어 있었으며 또 그것으로 適當했으나 時代要請에 의해 지난 100年間 6次(1900, 1911, 1925, 1934, 1958, 1967)에 걸쳐 改正補完되어 지금은 1967年の 스톡홀름條約에 의해 46個條로 되었으며當初의 原文길이의 5배나 된다. 第7次 改正이 1980年에 始作되어 지금 進行中이다.

WIPO는 WIPO執行委 年次總會期間에 WIPO 本部에서 9月 26日 100周年紀念行事를 가진 豫定이다.

파리協約樹立에 功이 큰 프랑스는 이미 5月 25日 파리에서 紀念行事를 가진 바 있다.

〈WIPO 提供〉

## 콩고 나이로비條約批准

콩고政府는 1983年 2月 8日 나이로비條約批准書를 寄託하였다.

同條約은 콩고에 대하여 1983年 3月 8日字로 發效한다.

나이로비告示 No. 9., 1983. 2. 9

〈WIPO 提供〉

## 과테말라 나이로비條約加入

과테말라 政府는 1981年 9月 26日에 나이로비에서 採擇한 올림픽標章保護에 관한 나이로

비條約의 加入書를 1983年 1月 21日 寄託하였다.

同條約은 1983年 2月 21日字로 과테말라에 대하여 發效한다.

나이로비告示 No. 8, 1983. 1. 21

〈WIPO 提供〉

## 美 反트러스트法 改正

—損賠額 3倍辨償을 止揚—

美國政府는 反트러스트事件에서의 3倍賠償適用을 制限하고 또한 特許라이센스 行爲에 대한 權利濫用主張에서 特許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法案을 承認하였다. 이 法案은 美國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力強化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이 法案에 따르면 종래 클레이터法 第4.4a 및 4c條에 규정된 바 3倍賠償 대신에 裁判所는 실제 손해액, 利子, 費用 및 適正訴訟費를 支拂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特許 News 提供)

## 佛 UPOV 施行令 批准書寄託

프랑스政府는 1961年 12月 2日 調印, 1972年 11月에 제네바에서 改正된 新種植物保護를 위한 國際協約(UPOV) 施行令(1978. 10. 23日字)에 대한 批准書를 1983年 2月 17日에 寄託하였다.

同批准書에는 다음과 같은 宣言이 包含되어 있다.

“協約 36條(1)項에 관하여 프랑스政府는 海外領土를 包含한 프랑스共和國領土에 同項을 適用할 수 있음을 宣布한다.”

上記 施行令은 프랑스에 대하여 1983年 3月 17日에 發效된다.

UPOV 告示 No. 27, 1983. 2. 22

〈WIPO 提供〉